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476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4760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2006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숨결로

담당변호사 백운우, 김주은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최영준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20068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I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6. 체결된 2012. 10. 30.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22,457,5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B은 13,474,519원, 피고 C는 8,983,0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2149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4. ‘피고(E)는 원고에게 13,793,620원과 그 중, 가. 2,816,627원에 대하여는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 나. 4,921,771원에 대하여는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2. 12.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E의 아버지인 O는 1994. 2. 20. 사망하였고, E의 어머니 F은 2012. 10. 30.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 G, H, I, E, 대습상속인 J, K, L는 망 F 명의의 대구 중구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11. 26.접수 제191846호로 2012.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은 2021.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N에 매도하고 2021.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I은 2022. 8. 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가 위 I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과 망 I 사이에 2020. 11. 16. 체결된 2012. 10.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E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22,457,532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각 상속지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F이 사망한 무렵인 2012. 10. 30.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망 I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2)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참조).

3) 그러나, 이에 더하여 ① 민법 제406조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를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재산분할협정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 법률행위의 성립시점 자체를 소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③ 민법 제1015조 후문은 상속재산의 분할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점과 효력 발생시점이 상이한 점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④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재산(잠정적 공유상태인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할 의도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사실상 조장하게 되는 점, ⑤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게 되나,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이루어진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과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협정의 사해행위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실제 그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성립된 날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성립된 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5 내지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정은 2020. 11.

16.경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F이 2012. 10. 30.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I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F이 사망한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한 2020. 11. 16.경에야 이루어졌다.
- ② E은 2020. 3. 31. 원고가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2149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불6201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았고, 2020. 4. 17. 채무자인 E에게 그 결정등본이 송달간주되었다. E과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B은 위 결정 이전인 2020. 3. 14. 채무자 E에 대한 심문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비추어보면 E은 물론 피고 B과 배우자인 망 I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작성 일시가 2020. 11. 16.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F이 사망할 무렵인 2012. 10. 30.경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2. 10. 30.경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제1심증인 G의 증언 및 상속인들인 G, E, H, J, K, L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이 존재하는데, 위 상속인들로서는 E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이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E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망 I의 단독소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을 유인이 있었다고도 보이는 바, 위 상속인들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또한 제1심증인 G은 F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망 I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⑤ 또한 위 G의 증언 및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망 O가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망 I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F이 사망한 이후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는 G이 납부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는 망 I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F이 사망할 무렵인 2012. 10. 30.에 이루어져 망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G이 아닌 망 I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G이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2012. 10. 30.에 이루어졌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실상 소유자인 망 I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20. 11. 16.경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으로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20. 11. 16.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적어도 그 판결이 확정된 2019. 2. 12.경에는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보전채권이 되고, 달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20. 11. 16.경 E은 상속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5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E은 202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2149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불6201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비추어보면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1/5)을 포기하였는바, 그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망 I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아 피고 B이 이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피고 B은 물론 배우자인 망 I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 등 상속인들이 망 I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할 무렵 공동상속인인 E의 채무와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망 I에 대하여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2020. 11. 16.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1. 11. 18.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수탁자 P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이후 제3자인 주식회사 N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7. 25.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건 부동산 가액(공동담보가액) : 120,000,000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6. 10.자 매매 실거래가 600,000,000원 × E 상속지분 1/5)
-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 22,457,533원(원금 13,793,620원 + 지연손해금 합계 8,663,913원)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한 원금 13,793,620원 및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3. 1. 6.까지의 위 원금 중 2,816,6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145,462원(=2,816,627원에 대한 2018. 7. 14.부터 2023. 1. 6.까지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위 원금 중 4,921,7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5,518,451원(=4,921,771원에 대한 2018. 7. 14.부터 2023. 1. 6.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액.

3) 소결론

따라서 망 I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6. 체결된 2012. 10. 30.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6.까지의 피보전채권액 중 22,457,5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써

원고에게, 피고 B은 상속지분에 따른 13,474,519원($=22,457,533\text{원} \times 3/5$), 피고 C는 상속지분에 따른 8,983,013원($=22,457,533\text{원} \times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재윤, 판사 김우정, 판사 차은경

별지